

#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 예고합니다.

2019. 6. 10.

공 주 시



1. 예고기간 : 2019. 6. 10. ~ 2019. 6. 24.
2. 예고방법 : 공주시 홈페이지 게시
3. 직권말소일 : 2019. 6. 10.
4. 말소예고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	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김*엽	건축물 위 치	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270
	주 소 (대상상주소)	방문리 322	건축물 현 황	주2 1층 세멘트벽돌 공장 359.6㎡ 부2 1층 세멘트블럭/스레트 부속사 21㎡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건축물의 철거·멸실			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	
마. 법적근거 및 조문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			